

老人의 居住形態 決定要因에 관한 研究

鄭京姬

본 연구는 우리나라 노인의 거주형태의 변화와 그러한 거주형태의 변화가 갖는 의미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노인의 거주형태를 자녀와의 동거, 근거리 별거, 원거리 별거로 나누어 그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1998년도에 실시한 『1998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의 원자료를 사용한 분석결과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속적인 핵가족화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있는 노인의 48.8%는 자녀와 동거하고 있으며 10.2%는 동일가구를 형성하고 있지는 않지만 가까운 거리에서 거주하고 있다. 둘째, 노인의 거주형태에 있어 노인의 거주지역별 차이가 매우 크다. 읍·면부 거주 노인의 경우 자녀와의 동거율은 40.4%로 동부 거주노인의 53.7%보다 낮은 반면, 원거리 별거율은 53.0%로 동부의 33.9%보다 월등히 높다. 셋째, 자녀의 거주유형에 있어 지역과 결혼상태라고 하는 배경변수, 인구학적 '가용성'으로서의 아들이 있는가 여부, 독립적인 소득원이 있어 경제적 '가능성'이 있는가, 노인이 자녀와의 별거를 선호하는가 하는 문화적 '선호'가 중요한 결정요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예견되는 노인의 경제적 능력의 증대, 단독가구 선호의 증대, 자녀수의 감소는 미래의 노인세대들의 자녀와의 별거가구 형성률을 높일 것으로 예견된다.

위와 같은 분석결과에 기초해 볼 때 다양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가족은 노인부양의 가능성을 갖고 있으므로 그 '가능성'을 '현재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노인의 거주형태별로 즉, 자녀동거, 근거리 별거, 원거리 별거별로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실제적인 서비스제공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서 지역적 차이를 심각히 고려해야 한다. 읍·면부의 경우 신체적인 부양을 받을 가능성이 낮은 노인이 절반을 넘고 있으므로, 이들을 위한 정책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주요용어: 거주유형, 핵가족, 수정확대가족, 확대가족, 가족부양, 인구학적 '가용성'(availability), 경제적인 '가능성'(feasibility), 문화적인 '선호'(desirability)

I. 序 論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서 노인의 거주형태에 대한 학문적·정책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급격한 고령화는 노인인구의 증대에 따른 부양증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이는 가족의 노인부양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이해되는 노인의 거주형태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인구추계(통계청, 2001)에 의하면 2002년도 현재 노인인구는 377만 2천명으로 전체인구의 7.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인인구의 증가와 함께 부부만 생활하거나 또는 혼자서 생활하고 있는 단독가구 거주 노인도 증가하고 있다¹⁾. 2001년도 현재 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노인은 49.3%이며 노인단독가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은 전체노인의 45.5%이다. 1985년에 자녀동거율이 78.3%이고 노인단독가구인구가 20.5%였던 것과 비교해보면 매우 급격한 변화이다(表 1 참조)²⁾. 이러한 변화는 평균수명의 연장, 도시화에 따른 젊은 층의 이주, 핵가족화, 기혼 여성의 취업 증가, 노부모 부양의식의 약화 등과 같은 다양한 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김익기 외, 1999; 김태현 외, 1994). 이러한 노인의 자녀와의 동거율 저하와 노인단독가구의 증가추세는 미래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김태현 등(1995)은 21세기에 우리가 당면하게 될 노인문제 중 하나로 노인단독가구의 증가를 들고 있다. 따라서

1) 이는 단독가구거주 노인의 비율이 75.2%인 미국에 비하여 아직도 낮은 비율이지만 아시아권의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때는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다 (Kono, 1998). 또한 노인단독가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도 관심을 필요로 하는 측면이다.

2) 이는 기존의 예측보다 훨씬 빠른 증가세이다. 김태현 등(1995)이 전체노인 중 노인단독가구의 비율이 2000년에 35%, 2010년에 45%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노인의 거주형태의 변화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表 1〉 老人의 居住形態 및 社會的 環境의 變化

	1985 ^{a)}	1989 ^{b)}	1994 ^{c)}	1998 ^{d)}	2001 ^{e)}
거주형태 ¹⁾					
독거노인	20.5	9.6	16.2	17.9	21.6
부부노인		13.2	22.8	28.0	23.9
자녀동거	78.3	76.1	55.9	48.6	49.3
기타	1.2	1.1	5.1	5.5	5.2
고령화율 ^{f)}	4.3	4.8	5.7	6.6	7.6
합계출산율 ^{g)}	1.67	2.2	1.67	1.47	1.3
여성경제활동참가율 ^{h)}	41.9	47.0	48.3	49.5	48.8

註: 1) 1985년 자료는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결과이므로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할 경우 자녀동거율이 이보다 더 높을 수 있을 것임. 또한 부부노인, 기타의 분류 기준에 각 보고서마다 상이한 차이가 있음.

資料: a) 임종권 외, 『한국노인의 생활실태』,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5.

b) 이가옥 외, 『노인가구의 구조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9.

c) _____, 『노인생활실태 분석 및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4.

d) 정경희 외, 『1998년도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e) 선우덕 외, 『노인장기요양보호 욕구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

f)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1.

g) _____, 『인구동태통계연보』, 각 연도

h) _____,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지금까지 노인의 거주형태에 관한 연구들은 자녀의 동거 여부에만 관심을 두었기 때문에 다양화되고 있는 노인의 거주형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김경혜, 1998; 원영희, 1996; 유성호, 1996, 2000). 즉, 기존의 연구들은 노인의 거주형태를 자녀와 동거하는가 여부에만 초점을 두어왔을 뿐 현대사회에서 핵가족보다 더 전형적이며 더 적응력이 있는 가족형태로 논의되고 있는 ‘수정확대가족’³⁾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3) Greven은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앤도버지역 연구를 통하여 그 지역의 지배적인 가족형태는 2세대 이상이 동일 가구는 아니지만 동일 지역에 거주하

분석에 끌어들이지는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거주형태를 자녀와의 동거, 근거리 별거, 원거리 별거로 나누어 살펴보고 그러한 주거형태의 결정요인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하며,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고령사회에서 갖는 정책적 함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理論的 背景 및 先行研究 檢討

1. 居住類型

거주형태는 자녀의 구체적인 부양수행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자녀와 동거하는 경우, 경제적·신체적·정서적인 부양이 가장 확실하게 수행될 수 있지만 사생활의 침해와 정서적 갈등이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는 역기능을 갖고 있다⁴⁾. 반면, 자녀와 별거하는 경우 자녀의 경제적, 정서적인 부양능력은 그리 크게 저하되지 않지만 신체적 부양기능은 매우 약화되어, 사생활 침해나 정서적 갈등이 현재화될 가능성은 낮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동거와 별거의 단점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는, 또는 동거와 별거의 장점을 모두 가질 수 있는 거주형태가

며 상호작용을 하는 형태임을 밝혀내고 그러한 가족형태를 '수정확대가족'이라고 명명하였다(Nock, 1987에서 재인용). Sussman(1976)과 Litwak(1985)은 이러한 수정확대가족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구성된 상호간의 정서적 유대에 기초한 친밀한 환경으로서의 가구라는 개념을 주장한 바 있으며, Riley(1983)는 가족을 자녀와 동거하지 않더라도 세대간의 관계가 밀접할 수 있으며 이는 노인이 실제적인 부양을 필요로 할 때 즉각적으로 동원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잠재적 틀'(latent matrix)로 파악하고 있다.

- 4) 시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며느리들은 '시부모와의 동거는 정신적으로 불편한 일이다', '남편이나 아이들과 오붓하게 즐길 수 없다', '내 가족과 부모님에 대한 책임감에서 스트레스를 느낀다'라는 점들을 동거의 어려움으로 지적하고 있다(한경혜·이정화, 2001).

근거리 별거 또는 수정확대가족이라 할 수 있다(김태현, 1993). 근거리 별거는 신체적인 부양에 있어서는 동거보다 즉각적인 대응이라는 측면에서는 불리하지만 어느 정도 수준의 신체적인 부양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경제적 부양이나 정서적인 부양에 있어서 충분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도 갖고 있으며 동시에 사생활 침해나 세대간의 정서적 갈등을 피할 수 있는 거주형태라 할 수 있다⁵⁾.

〈表 2〉 居住形態別 機能과 逆機能의 크기

거주형태	기능: 부양의 측면			역기능	
	경제적 원조	신변 케어	정서적 원조	사생활의 침해	정서적 갈등의 현재화
동거	○	○	○	●	●
근거리 별거	○	○	○	●	●
원거리 별거	○	●	○	●	●

資料: 森岡清美·望月嵩 편, 『새로운 가족사회학』, 培風館, 1988, p.125.(이종복 외 번역, 『가족복지』, 2001.에서 재인용)

2. 居住形態에 影響을 미치는 要因들⁶⁾

노인의 거주형태 및 세대간의 관계에 관한 이론들은 근대화과 문화의 영향력을 강조하고 있다. 근대화 이론에 따르면 기술발전, 산업화, 근대 교육, 전문화 등은 고령화와 가족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5) 이러한 맥락에서 Silverstein과 Bengtson(1997)은 세대간의 관계의 강도와 구조를 단순한 주거유형이 아니라 감정적인 밀접성, 접촉 빈도, 기능적인 부양의 교환 등의 측면을 통하여 이해하려 시도하였다. 이들의 연구는 노인의 거주형태와 세대간의 관계 및 부양의 교환이 고착된 관계를 갖는 것이 아니므로 자녀와의 별거가 곧 자녀로부터의 고립과 가족의 부양기능의 약화라는 결론으로는 이어질 수 없으며, 경험적 검토를 필요로 한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6) Devos and Holden(1988), Crimmins and Ingegneri(1990), Aquilino(1990)의 연구는 서구에서의 노인의 거주형태 결정요인에 관한 전형적인 연구이다.

(Cowgill, 1986; Parsons, 1955). 산업화는 핵가족화를 촉진시키며 근대 교육은 친족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개인의 성취를 강조하는 가치관의 변화를 초래하였다. 바꾸어 말하면, 근대화는 노인들의 단독가구형성과 매우 강한 선택적 친화력(selective affinity)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문화적 접근에서는 모든 문화가 노화의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독특한 행위와 규범을 갖고 있다고 본다(Hendricks and Hendricks, 1979). 예를 들어 한국, 중국, 일본, 태국과 같은 아시아 국가들은 효라고 하는 규범과 노인들의 거주형태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어, 서구국가에 비하여 자녀와의 동거율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급격한 근대화 와 문화적 가치체계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노인의 주거형태를 둘러싼 환경도 변화하고 있다.

Goldscheider와 Goldscheider(1989)는 문화적인 '선호'(desirability) 경제적인 '가능성'(feasibility), 인구학적 '가용성'(availability)을 노인들의 거주형태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로 지적하고 있다. 문화적인 선호라는 측면에서 살펴볼 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핵가족을 선호하고 있다(정경희 외, 1998)⁷⁾. 이는 '효'사상과 가족중심적 사고에서 개인주의로 옮겨가는 문화적인 가치체계의 변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는 노인부양에 대한 자녀의 의지(willingness)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한경혜, 1998).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변화가 노인들의 거주형태에 어떤 수준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있다.

과거에 비하여 점점 더 많은 노인들이 독립적인 생활을 희망하고 있으며 자녀에게 의존하고 싶어하지 않고 있다. 많은 연구들이 젊은 세대 뿐만 아니라 노인들도 단독가구를 희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⁸⁾. 또

7) 서구의 경우 젊은 세대와 노인세대가 모두 동거하는 것보다는 가까운 거리에 거주하면서 '적절한 거리에서의 친밀함'(intimacy from a distance)을 선호한다는 지적이 있다(Haraven, 2001).

8) 노인들이 자녀와 별거하기를 원하는 이유 자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실시된 적은 없지만, '왜 자녀와 동거 및 별거하고 있는가'에 대한 노인들의 응답에서 이해의 단초를 찾을 수 있다. 김익기 등(1997)의 연구에 의하면,

한, 노인들의 가족내 위상도 많이 변해왔다. 전통적인 확대가족 내에서는 노인들이 가족의 중심이었으며 가정생활의 모든 측면에서 결정권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개인주의와 핵가족에 대한 선호가 증대함에 따라서, 노부모와의 동거가 더 이상의 문화적인 규범으로 자리잡지 못하게 되었다(성규탁, 1995). 이러한 경향을 살펴보면, 동거는 더 이상 문화적인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 되었다. 이러한 태도의 변화로 인하여 자녀와의 동거는 과거와는 매우 다른 형태를 갖게 되었다. 즉, 더 이상 노부모가 확대가족의 중심이 아니며 결정권도 약화되었다. 또한 자녀와 동거하지 않고 단독가구를 이룬다는 것은 더 이상 자녀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기보다는 노인들이 제측면에서 능력을 갖고 있어서 자발적으로 독립성을 추구하는 측면도 있다는 것이다.

노인이 단독가구를 형성할 수 있는 경제적인 가능성의 측면으로는 소득과 주택소유 유무가 지적되고 있다(Wolf and Soldo, 1988; Rhee, 1994). 그러나 경제적인 가능성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가능성도 거주형태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Kamo and Zhou, 1994). 경제적 및 신체적 가능성의 수준이 낮을수록 노인들이 자녀와 살 가능성이 증가한다고 한다.

인구학적 가용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자녀수가 많을수록 자녀와 함

자녀와 별거하고 있는 노인들은 ‘따로 사는 것이 편해서’, ‘자녀가 싫어하므로’, ‘경제적 능력이 있으므로’, ‘신체적으로 건강하므로’ 등으로 개인주의적 가치관의 변화와 단독으로 생활할 수 있는 경제적·정신적 독립성을 그 이유로 들고 있다. 한편, 자녀와 동거하는 경우 동거이유로 ‘당연한 일이므로’, ‘가정의 관습이니까’와 같은 규범적인 요인, ‘경제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 ‘몸시중을 받기 위해’라는 응답과 같이 자녀로부터의 부양을 기대해서 동거하는 경우와 ‘경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손자녀, 가사일을 돌보려고’ 등으로 자녀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동거한다고 답하고 있다. 즉, 노인들 사이에서도 개인주의화(또는 개인주의화되어 있는 자녀가 동거를 싫어하는 것을 간과함으로써)와 자신의 자립성의 상징으로 자녀와 별거하기를 원하고 있는 집단과, 전통적인 가치관을 고수하는 집단으로 나뉘어져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자녀와 동거의 경우, 자녀로부터 다양한 부양을 받기 위한 경우뿐만 아니라 자녀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인 경우가 혼재해 있다.

게 살 가능성이 높아진다⁹⁾. 우리나라가 급속한 출산력의 저하를 경험하고는 있지만, 현 세대의 노인들은 높은 출산력을 나타낸 세대로 현재 평균 4.7명의 생존자녀를 갖고 있어 인구학적 가용성은 아직도 높다고 볼 수 있다(정경희 외, 1998). 그러나 가부장적 전통이 아직도 강하게 남아 있는 한국에서는 노인이 아들을 갖고 있는가 여부도 중요하다. 한국의 경우 노인이 많은 자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들이 없는 노인은 4.3%에 불과하다(정경희 외, 1998). 아들여부는 노인의 자녀동거 여부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원영희, 1996) 노후가치관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Kim and Rhee, 1999).

이 외에도 배경변수로서 지역, 연령, 결혼상태, 교육수준 등을 살펴볼 수 있다. 특히 급속한 도시화를 경험한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은 노인의 거주형태에 매우 중요한 영향력을 가질 것이다. 도시화율이 1960년의 28.0%에서 2000년 현재 79.7%로 급증하였으며 읍·면부 거주 비율에 있어 연령군별 차이가 커, 노인의 경우 다른 연령층보다 읍·면부 거주 비율이 높다¹⁰⁾. 또한 나이가 들면 신체적·정신적 기능이 저하되어 자녀와 동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Lee and Dwyer, 1996). 배우자가 없는 노인의 경우 배우자가 있는 노인보다는 독립가구를 형성할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녀와 동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원영희, 1996; Aquilino, 1990; Crimmins and Ingegneri, 1990; Lee and Dwyer, 1996). 또한 배우자가 없는 노인은 자녀와의 동거 여부에 따라서 심리적 행복감이 상당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무배우 노인의 경우 자녀와의 동거를 희망할 가능성이 높다 하겠다(원영희, 1995). 계층을 나타내는 지표의 하나인 교육수준의 경우 교육수준이 높은 노인일수록 경제적 자립성과 개인주의적 가치관을 갖고

9) 미국의 경우 자녀수가 세대간의 관계 및 관계의 질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Uhlenberg, P. and Cooney, T., 1990)

10) 2000년 현재 전체인구의 20.3%만이 읍·면부에 거주하는 데 비하여, 노인 인구의 경우 40.6%가 읍·면부에 거주하고 있다.

있을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자녀와의 별거를 희망할 가능성이 높다(김경혜, 1998; 원영희, 1996; Ward, Logan, and Spitze, 1993).

3. 先行研究의 檢討

노인의 거주형태의 변화에 대한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노인의 거주형태의 결정요인을 밝혀보려 한 경험적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¹¹⁾. 원영희(1996)의 연구나 김경혜(1998)의 연구는 노인의 거주형태와 거주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나 자료가 서울시 거주노인에 한정되어 있다고 하는 제한점을 갖고 있다. 유성호(1996)의 연구도 서울특별시, 경기도,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전국자료를 기초로 한 선행연구로는 『1994년도 전국노인생활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한 이가옥 외(1994)의 연구와 유성호(2000)의 연구가 유일한 것이다. 그러나 이 두 연구는 노인의 거주형태를 자녀와의 별거여부로만 이분하고 있어 노인의 거주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자녀와의 별거와 동거라는 이분법이 아니라 근거리 별거를 분석에 끌어들이는 연구로는 이현송 외(1996)의 연구가 있는데, 여성의 경제활동여부에 따른 부모와의 거주형태를 확대가족, 수정확대가족, 핵가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있다. 그러나 위의 연구는 노인의 시각이 아니라 자녀의 시각에서의 분석을 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한이 있다¹²⁾.

11) 이는 많은 연구들이 노인의 거주형태 자체보다는 거주형태에 따른 결과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강유진·한경혜(1997), 오영희(1999) 등은 거주형태에 따른 부모부양실태를 살펴보고 있으며, 이숙현·손승영(1992)은 자녀동거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부모와 자녀의 동거만족도를, 정혜정·서병숙(1998), 한경혜·이정화(2001) 등은 노부모 동거에 대한 혜택 및 비용을, 원영희(1995)와 양옥경(1998)은 노인의 거주형태가 노인의 삶의 주관적 측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12) 이 연구에 따르면 기혼취업여성의 부모동거율이 16.6%로 미취업여성의 13.0%보다 높고, 수정확대가족의 비율도 14.9%로 미취업여성의 10.4%보

노인의 거주형태 결정요인에 관한 기존연구의 주요결과를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60세 이상의 전국자료에 기초하여 노인이 배우자가 있는가 여부로 구분한 후 자녀와 별거여부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이가옥(1994)의 연구에 의하면, 독신노인과 부부노인의 경우 모두 공통적으로 지역, 주수입원 형태, 자녀별거 선호도, 아들 유무가 중요한 결정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독신노인의 경우는 주택소유 여부, 생존자녀수가 부부노인의 경우는 남편의 ADL 제한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울시에 거주하는 자녀가 있는 60세 이상 노인 300명을 대상으로 한 원영희(1996)의 연구에 의하면 연령, 결혼상태, 건강상태, 교육수준, 주수입원의 유형, 아들유무, 가족규범 등과 같은 사회인구학적 요인과 규범적 요인 모두에 의하여 노인의 자녀 동거 유무가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인들의 거주형태가 자신의 선호도뿐만 아니라 노인의 의존도에 의하여 결정됨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서울시, 경기도, 충청남도에서 거주하는 60세 이상 213명을 대상으로 한 유성호(1996)의 연구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또한 유성호(2000)의 최근 연구에 의하면 군지역에 거주하고, 배우자가 생존해 있고, 월소득이 많고, 자녀가 적을수록 성인자녀와 동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국자료를 분석한 유성호(2000)의 연구는 전국자료를 분석했다는 장점은 있으나 기존의 연구에서 중요한 변수로 지적된 가족규범 변수가 분석모델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경제상황을 살펴볼 수 있는 변수로 가구소득이 포함되어 노인자신의 경제적인 독립성을 살펴볼 수는 없다는 제한이 있다.

한편, 김경혜(1998)의 연구는 노인들의 거주형태를 노인이 누구와 동거하는가에 초점을 두고, 독신가구, 노인부부가구, 자녀와 동거하는 가구, 자녀와의 친지 또는 비혈연과 동거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다 높다. 저자들은 이러한 결과를 기혼취업여성들이 자신의 일과 가정을 양립시키기 어려운 현실을 (시)부모와의 동거나 근거리 거주를 통하여 해결하려는 생존전략을 택하고 있는 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있다. 분석결과 노인들이 경제적·사회적 자원동원 능력을 갖고 있을수록 자녀와 별거하고 있다고 하는 자발적 요인적 측면과 더불어 자녀가 없는 경우 비자발적으로 단독가구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인이 자녀와의 동거를 희망하는 경우 자녀동거 확률이 높다.

이러한 기존의 연구결과들은 Goldscheider와 Goldscheider(1989)가 제시한 문화적인 ‘선호(desirability)’ 경제적인 ‘가능성’(feasibility), 인구학적 ‘가용성’(availability) 모두가 한국에서의 노인들의 거주형태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Ⅲ. 資料 및 分析方法

연구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1998년도에 실시한 『1998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의 원자료를 사용한 경험분석을 하였다. 이 자료는 노인과 관련한 유일한 전국조사로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센서스 표본조사구 중 섬지역과 시설단위 조사구를 제외한 전국을 대상으로 157개의 표본조사구를 시, 군 및 아파트 지역에 대하여 층화추출한 확률표본자료이다. 157개 표본조사구의 10,683가구를 방문하였고, 이 중 9,355가구에 대한 조사가 실시되었고, 조사된 가구 중 총 노인수는 2,726명이었으며 이 중 2,535명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었다. 이 중 생존 자녀가 있는 노인으로 본인응답이 이루어진 2,153명에 대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¹³⁾. 또한 조사구역이 표본으로 추출된 확률이 동일하지 않으며, 미방문가구를 및 조사미완율이 조사구마다 다르기 때문에 분석결과를 제시함에 있어서 단순표본합계치가 아니라 가중표본합계치(weighted sample

13) 자녀가 없는 경우 노인의 선택의 여지가 없이 자녀와 별거하는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논의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생존자녀가 있는 노인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total)를 제시하였다.

종속변수는 노인의 거주형태로 자녀동거, 자녀와 근거리 별거, 원거리 별거의 3범주로 구분되어 있다. 자녀가 별거하더라도 가장 접촉이 많은 자녀가 걸어서 30분 이내에 거주하는 경우는 근거리 별거로 분류하였다¹⁴⁾.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밝히기 위하여 multinomial logit analysis을 하였는데, 이는 종속변수가 범주형 변수(categorical variable)이고 범주가 3개 이상인 경우 각각의 종속변수에 대한 계수 값이 별도로 주어지, 독립변수들이 각각의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줄 수 있는 분석방법이기 때문이다.

독립변수는 4가지 집단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배경변수로 지역, 성, 연령, 결혼상태, 교육수준을 포함한다. 지역의 경우 읍·면부에 거주하는 경우는 '0'으로 동부거주의 경우는 '1'로 부호화하였다. 성별에서는 여성을 '0'으로 남성을 '1'로 부호화하여 여성을 준거범주로 하였다. 노인의 연령은 실제 만 연령을 연속변수로 포함시켰다. 교육수준의 경우 무학, 초등학교, 중학교 이상으로 구분하여 분석에 포함하였다. 두 번째는 인구학적 가용성과 관련된 변수로 생존자녀수를 연속변수로, 아들 유무는 없는 경우 '0'으로 있는 경우를 '1'로 부호화하였다.

세 번째 집단인 노인의 가능성 중 경제적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는 변수로는 노인이 독립적 소득원이 있는가 여부를 포함시켰는데 이는 노인이 독립적인 소득원이 있을 때 자녀와 별거하여 생활할 수 있는 경제적 독립성이 확보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신체적인 독립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목욕하기, 옷 갈아입기, 식사하기, 앉기, 걷기, 화장실 이용하기의 각 6가지 항목에 대하여 제한 정도에 따른 점수를 부여하여 연속변수로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신체적인 제한의 정도가 심한 것이다. 네 번째 집단은 노인의 문화적 선호와 관련된 변수로 단독가구를 선

14) 동일지역이라는 것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제시된 연구는 없으나 빈번한 접촉과 부양의 교환이 가능한 거리라는 점에서 걸어서 30분 미만이라는 것은 무리가 없는 기준으로 판단된다.

호하는 경우는 '0'으로 자녀동거를 선호하는 경우는 '1'로 부호화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은 <表 3>에 정리되어 있다.

<表 3> 分析에 使用된 變數들

변수명	정의
종속변수	
거주형태 ¹⁾	1: 원거리 별거 2: 근거리 별거 3: 동거
독립변수	
<u>배경변수</u>	
지역	0: 읍·면부(준거범주) 1: 동부
성	0: 여성(준거범주) 1: 남성
연령	65~96세
결혼상태	0: 무배우(준거범주) 1: 유배우
교육수준	1: 무학(준거범주) 2: 초등학교 3: 중학교 이상
<u>가용성(availability)⁴⁾</u>	
자녀수	현존 자녀수
아들 유무	0: 없음(준거범주) 1: 있음
<u>노인의 가능성(feasibility)⁴⁾</u>	
경제적 측면: 소득유형	0: 독립적 소득원 있음. (근로소득, 연금, 저축, 재산소득 등이 있는 경우) 1: 독립적 소득원 없음.
신체적 상태	일상생활수행능력 제한상태(6~24점)
<u>문화적 선호(desirability)</u>	
단독가구 선호 여부	0: 단독가구 선호(준거범주) 1: 자녀동거 선호

註: 1) 가장 접촉이 많은 자녀가 걸어서 30분 이내에 거주하는 경우를 근거리 별거로 분류하였으며, 자녀와 별거하고 있는 노인 중 가장 접촉이 많은 자녀에 대한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12사례에 불과하여 분석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IV. 分析結果

<表 4>에 의하면 자녀가 있는 노인의 48.8%가 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1.0%는 원거리 별거를 하고 있으며, 10.2%는 근거리 별거를 하고 있다. 즉, 자녀와 별거하고 있는 노인의 1/5은 자녀와 걸어서 30분 미만의 거리에서 살고 있다. 이러한 거주형태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자녀동거율은 읍·면부에 비하여 동부가 높아 각 40.4%와 53.7%이며, 근거리 별거의 비율은 동부가 12.4%로 읍·면부의 6.6%의 2배 수준을 보이고 있는 등 큰 차이가 있다. 즉, 자녀로부터 즉각적인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거리에서 생활하고 있지 않은 노인이 읍·면부가 동부에 비하여 20%포인트 정도 높아 읍·면부 거주 노인이 부양이라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노인의 거주형태를 성별로 비교해 보면, 남자노인에 비하여 여자노인의 자녀동거율이 높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자녀동거율은 노인의 결혼 상태에 따라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무배우 노인의 경우 자녀동거율이 60.9%로 유배우 노인의 37.4%의 거의 두 배에 달하고 있다. 이는 여자노인의 경우 무배우율이 높기 때문에¹⁵⁾ 남자노인에 비하여 여자노인이 자녀동거율이 높은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녀동거율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또한 연령이 높아질수록 신체적인 의존도가 높아지는 반면, 유배율이 낮아지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성 및 연령과 같은 노인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근거리 별거의 비율에는 큰 차이가 발견되지 않는다.

자녀수에 따른 자녀동거율의 일정한 변화는 발견되지 않고 근거리 비율에도 일정한 경향이 보이지 않는다. 반면, 아들이 없는 노인은 소수이기는 하지만, 아들이 없으면 자녀와의 동거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기는

15) 분석대상 노인의 성별 결혼상태를 살펴보면, 여자노인의 70.5%가 무배우 상태인 반면 남자노인의 12.2%만이 무배우 상태이다.

하나 두 집단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다. 또한 근거리에서 살고 있는 비율이 17.0%로 아들이 있는 노인의 9.9%에 비하여 월등히 높다.

〈表 4〉 諸特性別 居住形態¹⁾

특성	전체(노인수)	원거리 별거	근거리 별거	자녀동거
전체	100.0(2,141)	41.0	10.2	48.8
지역				
읍·면부	100.0(796)	53.0	6.6	40.4
동부	100.0(1,345)	33.9	12.4	53.7
성				
여자	100.0(1,333)	36.6	9.8	53.7
남자	100.0(808)	48.3	11.0	40.7
연령				
65~69세	100.0(857)	46.3	10.4	43.2
70~74세	100.0(647)	43.7	9.3	47.1
75세 이상	100.0(637)	31.2	10.9	57.9
결혼상태				
무배우	100.0(1,035)	31.0	8.1	60.9
유배우	100.0(1,106)	50.4	12.2	37.4
교육수준				
정규교육 받지 못함	100.0(1,092)	37.1	8.7	54.2
초등학교	100.0(658)	43.7	12.4	43.9
중학교 이상	100.0(391)	47.4	10.8	41.8
자녀수				
1	100.0(111)	45.7	11.3	43.0
2	100.0(147)	31.2	17.9	50.9
3	100.0(271)	43.1	7.3	49.7
4	100.0(430)	41.4	13.5	45.2
5	100.0(459)	41.3	9.2	49.5
6명 이상	100.0(723)	41.2	8.3	50.5
아들유무				
없음	100.0(91)	42.9	17.0	40.1
있음	100.0(2,050)	40.9	9.9	49.1
소득유형				
의존형	100.0(1,096)	28.3	8.3	63.4
독립형	100.0(965)	55.5	11.9	32.6
ADL제한 정도				
6점	100.0(1,464)	41.8	11.0	47.3
7~9점	100.0(411)	39.2	9.6	51.2
10점 이상	100.0(262)	39.4	7.4	53.2
단독가구 선호				
별거선호	100.0(340)	59.5	15.7	24.8
동거선호	100.0(1,801)	37.5	9.2	53.3

註: 1) 아들유무와 ADL 제한 정도를 제외하고는 모두 $p < 0.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아들유무 $p = 0.0560$, ADL 제한 정도 $p = 0.1999$).

한편, 노인이 독립적인 경제적 능력을 갖고 있는가, 즉, 노인이 근로소득, 연금 및 퇴직금, 재산소득과 같은 독립적인 수입원을 갖고 있는가에 따른 거주형태를 비교해 보면, 독립적 소득원을 갖고 있는 노인의 경우는 32.6%만이 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경우는 63.4%로 거의 2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독립형의 경우 근거리 별거율이 11.9%로 의존형의 8.3%보다 높다. 한편, 노인의 신체적인 상황에 따른 거주형태를 비교해 보면 신체적인 의존도가 높을수록 자녀동거율이 증대하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다.

또한 노인이 단독가구를 선호하는 경우 자녀동거율이 매우 낮아서 24.8%이며, 이는 단독가구를 선호하지 않는 노인의 53.3%의 약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또한 별거를 선호하는 경우 자녀와 근거리에서 살고 있는 비율이 15.7%로 자녀동거를 선호하는 노인의 9.2%보다 높게 나타났다.

다변량 분석에 의하면 배경변수 중 지역과 결혼상태라고 하는 배경변수의 영향력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表 5 참조). 읍·면부와 같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일수록 자녀와 원거리로 떨어져 살 가능성이 높는데 이는 자녀들이 취업 등의 이유로 도시지역으로의 이동이 빈번하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김태현 등, 1995). 따라서 도시지역이나 농어촌 지역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자료만으로는 노인의 거주형태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할 수 없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유배우 노인일수록 자녀와 원거리에서 별거할 가능성이 높는데 이는 근거리 별거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는 자녀가 결혼 후에는 독립된 세대를 이루고 살다가도 부모 중 한 명이 사망하여 혼자 살게 되는 경우 다시 합치는 경향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최재석, 1982). 다른 요인들을 통제하였을 때 성은 노인의 거주형태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아님이 밝혀졌다.

인구학적 '가용성'의 경우 자녀수의 영향력에 비하여 아들 유무가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변량 분석결과 자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반면 아들 유무는 통계적 유의성을 갖고 있어, 노

후보장의 일환으로 아들을 선호하는 가부장적 사고에는 현실적인 근거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表 5〉 居住形態를 決定하는 要因들

변 수	원거리 별거 vs. 동거	근거리 별거 vs. 동거	원거리 별거 vs. 근거리 별거
	b(s.e.)	b(s.e.)	b(s.e.)
절편	2.278**	-2.017	4.295***
배경변수			
지역(읍·면 기준)	-0.744***	0.375	-1.118***
성(여자노인 기준)	-0.068	-0.173	0.106
연령(연속변수)	-0.017	0.024	-0.042**
결혼상태(무배우 기준)	0.607***	0.823***	-0.217
교육수준			
초등학교	0.142	0.085	0.057
중학교 이상 (정규교육 받지 못한 노인 기준)	0.039	-0.261	0.300
가용성(availability)			
자녀수(연속변수)	-0.043	-0.070	0.237
아들유무(아들 없는 노인 기준)	-0.558*	-0.796*	0.237
노인의 가능성(feasibility)			
독립적 소득원(의존형 기준)	0.905***	0.900***	0.009
ADL 제한정도(연속변수)	0.027	-0.044	0.071
문화적 선호(desirability)			
독거가구 선호(별거 선호 기준)	-1.138***	-1.093***	-0.045
L2		3072.01	
d.f.		22	

註: *** p<0.001, ** p<0.01, * p<0.05

이러한 인구학적 ‘가용성’ 외에도 경제적 ‘가능성’과 문화적 ‘선호’가 자녀와의 동거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독립적인 소득원이 있을 경우 자녀와 동거할 가능성이 매우 낮아져, 경제적 독립성

이 노인들의 거주상의 독립성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노인이 단독가구를 선호할수록 자녀와 별거하여 단독가구를 이룰 가능성이 높아져 독립성에 대한 선호가 거주형태의 중요 결정요인임을 볼 수 있다. 이렇게 경제적 '가능성'과 문화적 '선호'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이론들이 제시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결과가 나온 반면에 신체적 '가능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고 있지 않다.

분석결과를 거주형태별로 살펴보면, 동거에 비하여 원거리 별거는 지역적 특성과 결혼상태라고 하는 배경적 요인의 영향력이 매우 크며, 노인이 경제적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고 별거를 선호하는 경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아들이 있을수록 자녀동거율이 높다.

근거리 별거의 경우는 원거리 별거와 비슷한 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만 지역적 특성의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노인이 동거를 선호하고 그러한 선호를 실현시킬 수 있는 능력(가족상황과 경제적 상황)이 있을 때 근거리 별거가 이루어지고 있고, 원거리 별거는 이 외에도 거주지역이라고 하는 노인의 개인적 차원에서 통제할 수 없는 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읍·면부에 거주하는 노인은 도시화에 따른 자녀세대의 도시지역으로의 이주로 인하여 '강요된' 원거리 별거를 하는 경우가 많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편, 자녀와의 별거시 원거리에 거주하는가, 아니면 근거리에 거주하는가에는 지역적 특성과 노인의 연령이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동부에 거주할수록 자녀와 별거하더라도 근거리에 거주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노인의 연령이 높을수록 근거리에 거주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V. 結 論

본 연구는 노인의 거주형태의 변화와 그러한 거주형태의 변화가 갖는 의미를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 있어 거주형태를 단순히 자녀와의 동거 여부만으로는 분류하여 살펴보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판단 하에 동거, 근거리 별거, 원거리 별거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가 노인의 거주형태를 이해하는 데 갖는 의미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지속적인 핵가족화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있는 노인의 48.8%는 자녀와 동거하고 있으며 10.2%는 동일가구를 형성하고 있지는 않지만 가까운 거리에서 거주하고 있다. 즉, 59%는 동거여부와는 상관없이 자녀로부터 '고립'되지 않고 필요한 경우 부양을 받을 수 있는 거주형태를 유지하고 있다¹⁶⁾. 따라서 가족의 구조적인 측면에서의 노인 부양능력의 약화라는 이야기를 할 때 관심을 가져야 하는 집단은 원거리 별거 노인이다.

둘째, 노인의 거주형태에 있어 노인의 거주지역별 차이가 매우 크다. 즉, 읍·면부 거주 노인의 경우 자녀와 원거리 별거 비율이 높아 부양이라는 측면에서 개별가족의 의지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읍·면부 거주 노인의 경우 자녀의 교육수준이 높고 높은 지위를 갖는 직업을 갖을수록 도시로 이주하는 경향이 있으므로(한경혜·윤순덕, 2000) 자녀의 특성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도 필요할 것이다.

셋째, 자녀의 거주유형에 있어 지역과 결혼상태라고 하는 배경변수, 인구학적 '가용성', 경제적 '가능성'과 문화적 '선호'가 중요한 결정요인이다. 기존 연구들은 젊은 세대들만이 부모와의 별거를 선호할 뿐만 아니

16) 물론 노인이 일방적으로 부양을 받기만 하는 존재는 아니다. 많은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것처럼 노인도 자녀세대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단지, 본 논문은 노인이 부양을 필요로 할 때 자녀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주거형태를 갖고 있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을 뿐이다.

라 과거에 비하여 점점 더 많은 노인들이 독립적인 생활을 희망하고 있어 단독가구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feasibility)만 된다면 자녀에게 의존하고 싶어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노인들의 자녀별거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다(한경혜, 1998; Han, 1996). 즉, 공적 연금 제도의 성숙에 따라서 노인의 경제적 수준이 향상되고, 일차적인 부양자 역할을 하는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는 자녀와의 별거를 선호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자녀가 적을수록 자녀와 동거할 가능성은 저하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문화적인 선호나 인구학적 가용성이라는 양 측면에서 모두 노인의 자녀별거 현상이 증가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예견되는 노인의 경제적 능력의 증대, 자녀수의 감소는 미래의 노인세대들의 단독가구 형성률을 높일 것으로 예견된다(정경희, 2002). 또한 노인들이 단독가구를 선호하는 태도를 가질수록 자녀동거 가능성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예비 노인층의 태도변화는 곧 거주형태의 변화로, 즉, 급격한 단독가구비율의 증대로 이어질 것이다(김두섭 외, 2000).

위와 같은 분석결과가 갖는 정책적 함의를 살펴보면, 아직도 노인의 가족부양의 '가능성'은 있다는 것이다. 과제는 가족의 그 '가능성'을 어떻게 '현재화' 시킬 것인가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노인과 원거리에서 별거하고 있는 가족은 정서적 부양에 초점을 두도록 하고 신체적 보호는 공적서비스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법의 가족보호와 사회적 보호의 기능분담이 요구된다. 즉, 정서적 부양과 신체적 부양이라고 하는 영역별 분담을 통하여 부양의 수준과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근거리에서 별거하고 있는 가족의 경우는 신체적 수발에 있어서 가족과 사회적 보호서비스가 어떻게 역할분담을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원거리 별거보다는 신체적 수발을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체·정신적 의존상태에 놓인 부모의 수발에 있어서 자녀를 어떻게 수발제공의 동반자로 끌어들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이다.

또한 자녀별거율에 있어 지역별 차이가 크다는 사실은 실제적인 서비

스제공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읍·면부의 경우 자녀와 원거리에 별거하고 있어 실제적인 부양을 받을 가능성이 낮은 노인이 53.0%에 달하고 있어, 원거리 별거시 부양기능이 가장 급격하게 저하되는 것으로 알려진 신체적 부양서비스의 제공이 시급한 문제임을 볼 수 있다. 원거리 별거는 자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물리적으로 신체적 부양을 제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읍·면부 거주 노인 중 신체적 부양이 필요한 자녀별거 노인에게 정책적인 관심이 두어져야 할 것이다. 더불어, 2000년도 센서스에 의하면 전체 인구의 79.7%가 동부에 거주하고 있는 데 비하여 65세 이상 인구는 59.4%만이 동부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도 다른 연령집단에 비하여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지역적 차이를 심각히 고려해야 함을 말해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노인의 거주형태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이해를 위해서는 노인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특성도 분석들에 포함되어야 하며, 자녀결혼 직후부터의 부모의 거주형태의 시계열적인 변화를 추적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하고자 한다¹⁷⁾. 물론 이러한 연구를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경험적 자료가 요구된다.

參 考 文 獻

강유진·한경혜, 「비동거 자녀의 노부모 부양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제17권 제1호, 1997, pp.271~288.

17) 이와 관련하여 미국학계는 생애사적 시각에서 거주형태의 변화를 살펴보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Wilmoth(1998)나 Hays and George(2002)의 연구가 대표적인 것이다. 한편, Ward, R. A., Logan, and Spitze(1992)의 경우 부모와 자녀의 특성을 함께 고려하고 있으며, 한경혜·윤순덕(2000)은 농촌노인에만 초점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 생애과정의 관점에서 자녀의 특성을 분석들에 포함시킨 연구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하겠다.

- 김경혜, 「노인들의 동거형태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서울시 거주 노인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제18권 제1호, 1998, pp.107~122.
- 김두섭 외, 「중년층과 노부모의 세대관계와 중년층의 노후부양관」, 『한국인구학』 제23권 제1호, 2000, pp.55~89.
- 김익기 외, 『한국노인의 삶』, 서울: 미래인력센터, 1999.
- 김태현, 「한국의 인구와 가족」, 『인구의 성장과 구조』, 서울: 일신사, 1999.
- _____, 「한국에 있어서의 노인부양에 관한 연구」, 고려대 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1981.
- 선우덕 외, 『노인장기요양보호 욕구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
- 성규탁, 「한국인의 효행의지와 연령층들간의 차이」, 『한국노년학』 제15권 제1호, 1995, pp.1~14.
- 양옥경, 「노인의 거주상태에 따른 사회적 지지와 삶의 만족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사업의 쟁점과 과제: 정진영교수 정년퇴임 기념논총』, 서울여자대학교 사회사업학과, 1998, pp.187~206.
- 오영희, 「자녀의 동거여부에 따른 부모부양실태와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30호, 1999, pp.57~66.
- 원영희, 「한국노인의 거주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가족학논집』 제8권, 1996, pp.77~90.
- 유성호, 「노인과 성인자녀의 별거를 결정하는 변인: 그 이론적 탐색 2」, 『노인복지연구』, 2000 여름호, pp.169~185.
- _____, 「노인과 성인자녀의 별거를 결정하는 변인: 이론적 탐색」, 『한국노년학』 제16권 제1호, 1996, pp.51~68.
- 이가옥 외, 『노인생활실태 분석 및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4.
- _____, 『노인가구의 구조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9.
- 이숙현·손승영, 「확대가족에서의 세대간 동거만족도 비교」, 『한국사회학』 제26집, 1992 겨울호, pp.145~164.

- 이현송·정경희 외, 『여성의 경제활동과 가족복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6.
- 임종권 외, 『한국노인의 생활실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85.
- 정경희, 「가족변화에 따른 노인부양실태와 정책적 함의」,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68호, 2002, pp.29~40.
- 정경희 외, 『1998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 정혜정·이정숙·서병숙, 「3세대 가족대 성인자녀부부가 지각한 보상과 대가 및 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6권 제2호, 1998, pp.179~193.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1.
- _____, 『인구통태통계연보』, 각 연도.
- _____,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 최재석, 『한국가족연구』, 1982.
- 한경혜·이정화, 「부양의식, 형제자매 지원과 노부모 동거에 대한 혜택 - 비용 지각」, 『대한가정학회지』 제39권 제11호, 2001, pp.129~143.
- 한경혜, 「만성질환노인 부양체계로서의 가족의 역할: 21세기 변화전망 및 지원책 모색」, 『한국노년학』 제18권 제1호, 1998, pp.46~58.
- 森岡清美·望月嵩 편, 『새로운 가족사회학』, 培風館, 2001.
- Aquilino, W. S., "The Likelihood of Parent-adult Child Coresidence: Effects of Family Structure and Parental Characteristic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52, No.2, 1990.
- Brody, E. M., "Parent Care as a Normative Family Stress", *The Gerontologist*, Vol.25, 1985, pp.19~28.
- Cowgill, D. O., *Ageing around the World*, Belmont, CA: Wadsworth, 1986.
- Crimmins, E. and D. Ingegneri, "Interaction and Living Arrangements of Older Parents and their Children", *Research on Aging*, Vol.12, No.1, 1990, pp.3~35.

- Devos, S. and Holden, K., "Measures Comparing Living Arrangements of the Elderly: An Assessment",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Vol.14, 1988, pp.688~704.
- Goldscheider, F. K. and Goldscheider, C., "Ethnicity and the New Family Economy", in F. K. Goldscheider and C. Goldscheider (Eds.), *Ethnicity and the New Family Economy: Living Arrangements and Intergenerational Financial Flows*, Boulder, CO:Westview, 1989, pp.185~197.
- Han, G. H., "Tradition and Modernity in the Culture of Aging in Korea", *Korea Journal of Population and Development*, Vol.25, No.1, 1996, pp.41~57.
- Haraven, T., "Historical Perspectives on Aging and Family Relations", *Handbook of Aging and the Social Sciences*, 2001, pp.141~159.
- Hays, J. and George, L., "The Life-Course Trajectory Toward Living Alone", *Research on Aging*, Vol.24, No.3, 2002, pp.283~307.
- Hendricks J. and Hendricks, C. D., "Concerning Old Age: Interdisciplinary Dimensions", in J. Hendricks and C. D. Hendricks (Ed.), *Dimensions of Aging: Readings*, Cambridge, MA: Wintrop, 1979, pp.1~7.
- Kamo, Y and Zhou, M, "Living Arrangements of Elderly Chinese and Japanese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56, 1994, pp.544~558.
- Kim C. and Rhee, K, Family, "Self or State as a Desired Source of Support for the Elderly", 『한국인구학회』 제22권 제2호, 1999, pp.197~220.
- Kono, S, "Measure to Enhance Self-Reliance of Elderly Population: Options and Policies", Paper Presented at UNFPA ICPD+5 Technical Meeting on Population Ageing, Brussels, 6~9 October, 1998.
- Lee, G. R. and Dwyer, J. W., "Aging Parent-Adult Child Coresidence: Further Evidence on the Role of Parental Dependency",

Journal of Family Issues, 1996.

Litwak, E., *Helping the Elderly: the Complementary Role of Informal Networks and Formal Systems*, N.Y., 1985.

Nock, S. L., *Sociology of the Family*, Prentice-Hall, Inc, 1987.

Parsons, T., "The American Family: Its Relation to Personality and the Social Structure", in Parsons and Bales, (Eds.), *Family, Socialization, and Interaction Process*, Free Press, 1955.

Rhee, K. O. et al., *Analysis of Living Status of the Korean Elderly and Policy Implications*,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1994.

Riley, Matilda W., "The Family in an Aging Society: A Matrix of Latent Relationships", *Journal of Family Issues*, Vol.4, 1983, pp.439~54.

Silverstein, M. and V. L. Bengtson, "Intergenerational Solidarity and the Structure of Adult Child-parent Relationships in American Familie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103, No.2, 1997, Sept., pp.429~460.

Sussman, M. B., "The Family Life of Old People" in R. Binstock and E. Shanas(Eds.), *Handbook of Aging and the Social Sciences*, N.Y., 1976, pp.218~243.

Uhlenberg, P. and Cooney, T., "Family Size and Mother-Child Relations in Later Life", *The Gerontologist*, Vol.30, No.5, 1990, pp.618~625.

Ward, R. A., Logan, and Spitze, "The Influence of Parent and Child Needs on Coresidence in Middle and Later Lif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54, No.1, 1992, pp.209~221.

Wilmoth, J., "Living Arrangement Transition Among American's Older Adults", *The Gerontologist*, 1998, Vol.38, No.4, pp.434~444.

Wolf, D. A. and Soldo, B. J., "Household Composition Choices of Older Unmarried Women", *Demography*, Vol.25, 1988, pp.387~403.

Summary

A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Living Arrangements of Older Parents

Kyunghee Ch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factors which affect living arrangement of older parents. Previous research has dichotomized living arrangements of older parents whether they coreside with their children or otherwise. However, this study proposes that living arrangements of older parents can be better understood by dividing living arrangements of older parents in three categories such as coresidence, living in a separate household in the same community (modified extended family), living in a separate household in a distanced community (extended family).

This study analyzes the data of 『Living Profile and Welfare Service Needs of Older Persons in Korea』 survey conducted by KIHASA in 1998 to understand the current status of living arrangements and to find out the determinants of living arrangements.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in spite of rapid nuclearization of Korean families, 48.8% of older parents coreside with their children and 10.2% are living in a separate household in the same community. Second, there is a big difference in living arrangements between rural and urban areas. In rural areas, the rate of older persons living with their children is 40.4%, while the rate in urban areas is 53.7%. On the other hand, 53.0% of older persons lived apart far away in rural areas, while the rate in urban areas is 33.9%. Third, according to the multinomial logit analysis, statistically significant determinants of living arrangement of older persons are; (1) region and marital status as

background variables; (2) having a son as demographic 'availability'; (3) possession of independent income source as 'feasibility' of independent living arrangements; (4) preference to living with children as a cultural 'desirability' variable.

Based on above-mentioned results, I suggest that the government must develop the policies and programmes to activate care-giving potentiality of the families by living arrangements patterns. Because more than half of older persons in rural areas live far away from their children, rural elderly are vulnerable in terms of physical care-receiving. Therefore, we have to pay attention to rural elderly in policy making and implementation of social service policies.